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1/2564 호

효율성 향상을위한 조치

위는 투자촉진을 위한것으로 에너지 효율, 소비 개선에 대한 투자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기계류 수정 연구 및 개발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관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위한

국제 표준으로서의 향상에 대하여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과 18항, 28항과 31항에 따라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1. 2017년 10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9/2560 호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취소하도록 함
2. 에너지 절약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 영향 감소에 대한 규율
 - 2.1 위 조치는 투자촉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촉진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투자촉진 관련 업종이어야 함
 - 2.2 이미 투자촉진을 받고있었던 프로젝트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 및 권리에 대한 혜택이 만료된 경우 위 규율에 맞게 요청을 할수있으나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받지않는 특정 사업의 유형은 제외함
 - 2.3 프로젝트의 크기는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SMEs)의 프로젝트의 크기의 경우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2.4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가의 경우 2.3항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함
 - 2.4.1 투자촉진 요청자는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와 투자촉진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를 모두 총합한 합산 소득이 처음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투자촉진을 받기로 예정된 날까지 5억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 2.4.2 투자등록을 한 지분의 경우 태국 국민이 자본의 51%이상을 보유해야 함
 - 2.5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계 개조 관련 투자 계획을 제안해야하며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환경에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2.5.1 에너지 소비를 지정된 비율만큼 감소시키기 위한 현대적인 기술로 기계를 변화시키고

자 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2.5.2 재생 에너지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계 개조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총 에너지 소비량 대비 지정된 비율로 관련 사업에 알맞게 사용되어야함

2.5.3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계 개조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지정된 기준에 따라 폐기물, 폐수 또는 오염된 공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을 하게됨

2.6 권리와 혜택을 다음과 같음

2.6.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2.6.2 기계류 변경을 위한 총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3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토지 및 순환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제외한것으로 기존에 진행되고있는 법인세 면제를 혜택을 받는 사업에 적용이 됨

2.6.3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 인증을 받은후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계산을 하게됨

2.7 투자촉진을 요청하는자는 2022년 마지막날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투자촉진 인증서를 발급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함

3.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계 개조에 대한 규율

3.1 위 조치는 투자촉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촉진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투자촉진 관련 업종이어야 함

3.2 이미 투자촉진을 받고있었던 프로젝트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 및 권리에 대한 혜택이 만료된 경우 위 규율에 맞게 요청을 할수있으나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받지않는 특정 사업의 유형은 제외함

3.3 프로젝트의 크기는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SMEs)의 프로젝트의 크기의 경우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3.4 중소기업(SMEs) 자격을 갖춘 기업가로서 3.3항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함

3.4.1 투자촉진 요청자는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와 투자촉진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를 모두 총합한 합산 소득이 처음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투자촉진을 받기로 예정된 날까지 5억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3.4.2 투자등록을 한 지분의 경우 태국 국민이 자본의 51%이상을 보유해야 함

3.5 지정된 기준에 맞는 기계류 수정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안해야하며 이는 자동화 기계 또는 로봇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생산 라인 또는 서비스에 이용이 될것임

3.6 권리와 혜택을 다음과 같음

3.6.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3.6.2 기계류 변경을 위한 총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3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토지 및 순환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제외한것으로 기존에 진행되고있는 자동화 또는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로봇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국가의 자동화 기계 제조 산업에 관련된 법인세 면제를 혜택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며 토지 및 순환 자본을 제외한 투자금 100%에 대해서 기계 개조의 가치의 30%이상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됨

3.6.3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 인증을 받은후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계산 을 하게됨

3.7 투자촉진을 요청하는 자는 투자촉진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함

4. 연구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4.1 이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투자촉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촉진을 요청할 당시 투자촉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 범주내에 있어야함

4.2 이미 투자촉진을 받고있었던 프로젝트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 및 권리에 대한 혜택이 만료된 경우 위 규율에 맞게 요청을 할수있으나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받지않는 특정 사업의 유형은 제외함

4.3 프로젝트의 크기는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SMEs)의 프로젝트의 크기의 경우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4.4 중소기업(SMEs) 자격을 갖춘 기업가로서 4.3항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함

4.4.1 투자촉진 요청자는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와 투자촉진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를 모두 총합한 합산 소득이 처음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투자촉진을 받기로 예정된 날까지 5억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4.4.2 투자등록을 한 지분의 경우 태국 국민이 자본의 51%이상을 보유해야 함

4.5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 기준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함

4.6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비용이 투자촉진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처음 3년간 총 매출액의 1%이상으로 기업가와 중소기업(SMEs)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 촉진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처음 3년간 총 매출의 0.5% 이상을 엔지니어링에 투자를 해야함

4.7 권리와 혜택을 다음과 같음

4.7.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4.7.2 기계류 변경을 위한 총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3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토지 및 순환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제외한것으로 기존에 진행되고있는 법인세 면제를 혜택을 받는 사업에 적용이 됨

4.7.3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 인증을 받은후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계산을 하게됨

4.8 투자촉진을 요청하는자는 2022년 마지막날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투자촉진 인증서를 발급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함

5.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조치 마련

5.1 이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투자촉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촉진을 요청할 당시 투자촉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 범주내에 있어야함

5.2 이미 투자촉진을 받고있었던 프로젝트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 및 권리에 대한 혜택이 만료된 경우 위 규율에 맞게 요청을 할수있으나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받지않는 특정 사업의 유형은 제외함

5.3 프로젝트의 크기는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SMEs)의 프로젝트의 크기의 경우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만 바트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5.4 중소기업(SMEs) 자격을 갖춘 기업가로서 5.3항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함

5.4.1 투자촉진 요청자는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와 투자촉진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를 모두 총합한 합산 소득이 처음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투자촉진을 받기로 예정된 날까지 5억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5.4.2 투자등록을 한 지분의 경우 태국 국민이 자본의 51%이상을 보유해야 함

5.5 좋은 농업 관습(Good Agriculture Practices: GAP)과 같은 국제적 지속 가능성과 산림관리협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지침에 따른 산림 인증 표준, PEFCs(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시스템 표준, 식품 안전 관리(ISO 22000) 또는 산업 제품 표준 관리 시스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시스템 (ISO 14061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SFM)) 등에 맞는 산업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투자 또는 비용이 있어야함

5.6 권리와 혜택은 다음과 같음

5.6.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5.6.2 기계류 변경을 위한 총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3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

으며 이는 토지 및 순환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제외한것으로 기존에 진행되고있는 법인세 면제를 혜택을 받는 사업에 적용이 됨

5.6.3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 인증을 받은후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계산을 하게됨

5.7 투자촉진을 요청하는자는 2022년 마지막날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투자촉진 인증서를 발급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함

2020년 11월 4일부터 적용

2021년 1월 13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